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87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慎)’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 및 정직의 정의와 그 효력을 「군인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생략)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u>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u>	② <u>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u>
③ <u>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u>	③ <u>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u>	⑥ <u>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u>

한다.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강등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낮추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¹⁾하고 있음.

다만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중 강등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기간 및 보수감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직에 대해서는 보수감액의 정도를 군무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²⁾.

□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³⁾으로서 군인과 함께 군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무원과 군인의 징계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동일하

1)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3)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군사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인과 달리 예비군 관리·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함. 따라서 군인의 징계체계를 군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군무원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징계처분 중 강등과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 적용 및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⁴⁾되는 등 「군인사법」상 특유의 인사제도가 함께 적용되는바, 단순히 1계급을 강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인사상

4)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에서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불이익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음.

반면 군무원은 계급별 연령정년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제도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강등에 따른 효과가 군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현행과 같이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를 감액하는 효력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군무원의 인사제도 전반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징계처분 중 정직과 관련하여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직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정비⁵⁾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다시 「군인사법」과 동일한 체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시 개정 취지와 그간의 제도 운영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징계처분 중 정직의 효력을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근신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정직의 효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신의

5)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9558호, 2009.4.1. 개정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 17679호, 2020.12.22. 개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 한다.

의미, 근신 장소, 관리·감독 주체 등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군인과 군무원 간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징계처분 중 강등 및 정직을 「군인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